문서번호	인사처-2594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3.20.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39호

★선임	팀장	인사처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협 조				

2018년 직원 표창 계획

2018.

서울시설공단 인사처

2018년 직원 표창계획

공단 각 직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를 정착시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Ⅰ 기본방향

- ☐ **포상을 통한 공단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 성과 달성 유도**
- ☐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 **「新표창제도」 유지 및 제도 정착**

< 2018년 주요 개선사항 >

① **정기표창 규모 확대** : 포상수여자 확대로 신명나는 조직문화 구축(전년대비 증111명)

- 〈17년〉 199명 → 〈18년〉 310명 * 시장표창 포함

※ 신규사업 인수 등에 따른 현원 증가 반영 및 서울시 산하 타기관 표창수여 수준고려

〈17년〉 2,951명, 199개 → 〈18년〉 3,150명, 310개 : 현원의 10% 수준으로 규모 확대

규 모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시 장	32	44	증 12개
이사장	167	266	증 99개

② **정년퇴직유공표창 대상자 확대**

- 〈기존〉 일반직, 서비스직 → 〈확대〉 공무직, 준공무직, 상수도 기간직 포함

※ 대상자 확대에 따른 부상품 (근속기간별)차등 지급(안) … 상세별첨 (별첨2)

③ **사업별 표창 규모 확대·신설하여 경영목표 달성의 원동력 제공**

- 공단 각 부서 표창 수여계획 조사를 통하여 공단 5대 경영목표와 연계된 사업별 표창의 확대·신설

Ⅱ 표창규모

▢ 정기표창 : 310명 (인사처 주관)

표창명칭	계	훈 격 별		직 군 별		
		시장	이사장	일반직	공무직	노조추천
총 계	310	44	266	227	41	42
근로자의 날	104	16	88	76	14	14
창립기념일	104	15	89	76	14	14
연 말	102	13	89	75	13	14

※ 일반직(사무, 기술, 조사, 조무, 상수도, 사회복지직 포함)

※ 현원 및 표창규모 : 〈17년〉 2,951명, 199개→〈18년〉 3,150명, 310개 (현원비례에 따라 직군별 표창 배분)

▢ 사업별 (수시)표창 : 44명 (각 사업부서 주관)

5대 경영목표	표 창 명 칭	규모	주관부서	비고
안 전 경 영 (4명)	안전관리수범	4	안전관리처	우수 안전관리 직원 포상
고객만족경영 (4명)	안전지킴이의날	4	안전관리처	(신설)안전점검 우수 직원
효 율 경 영 (8명)	재정신속집행유공	2	기획조정실	(신설)효율적 업무수행 및 공단재정에 기여
	소송수행유공	2		공단업무 및 재정에 기여
	기술분야유공	4	총무처	효율적 업무수행 및 공단발전에 기여
청 렴 경 영 (25명)	감사모범사례직원	25	감사실	종합·성과감사 등을 통해 발굴한 모범사례 직원에 표창
감 성 경 영 (3명)	사회공헌유공	3	총무처	나눔 실천 및 지역사회발전 노력

※ 사업별 표창 : 부서별 표창계획을 수합하여 표창의 성격 및 타부서와의 형평 등 검토 후 선정
… 사업별 표창 선정 기준 및 선정결과 별첨 (별첨1)

▢ 정년퇴직유공 표창 : 149명 (인사처 주관)

표창명칭	계	훈 격 별		직 군 별				비 고
		시장	이사장	일반직	공무직	준공무직	상수도 기간직	
정년퇴직유공	149	78	71	111	3	25	10	별첨2 참고

※ **포상시점** : **실질적 공단 퇴직 시**(60세, 65세), 근속 10년이상 시장표창 / 10년미만 이사장표창

※ **근속기간별**(근속 5년이상 / 5년미만) **부상품 차등 지급**(안) … 상세별첨 (별첨2)

Ⅲ 표창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분야별 추천 및 선발절차

(1) 정기표창 : 근로자의 날(5월), 창립기념일(9월) 및 연말(12월) 유공직원

○ 직원·부서 추천(전 직원 일원화된 표창제도 적용)

① 표창계획 수립/안내 〈 인 사 처 〉	○ 표창규모 및 선발절차 등 안내 ○ 부서 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한 부서별 추천가능인원 확정 *각 부서별 일반직/서비스직/공무직 직원구분별 추천가능인원 배정
② 표창대상자 추천 〈전 직원 → 각 부서〉	○ **추천권자** : 전직원 (직군, 부서 구분 없이 누구든 자유롭게 추천) ○ **추천방법** : 추천대상 소속 부서 담당자에 약식 공적조서(별첨3) 제출 * 이메일, 서면제출 등 공적조서 제출방법 자율구성
③ 부서추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부서〉	○ **구성** : 부서별 자체적으로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부서장 / 위원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자율구성) ○ **역할** : 자율추천된 대상자의 최종 추천여부 확정 및 순위 결정 - 자율추천된 소속직원을 부서별 확정된 추천가능인원 限 추천 ○ **평가** : 평가기준(별첨4)에 의거하여 부서별 자율평가 - 평가기준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여부 및 순위를 정하되, 여성, 하위직 및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 부서추천심사위원회 운영 시 추천자는 비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 要)
④ 추천심사위원회 결과 및 공적조서 제출 〈각 부서 → 인사처〉	○ 추천심사위원회 운영결과(심의의결서-별첨5) 제출 ○ 부서별 확정된 추천인원 限 공적조서(정식) 제출 ※ ETIS 포상관리 시스템에 등록
⑤ 표창대상 및 훈격 결정 〈상벌위원회〉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

○ **노조 추천 : 총 42 (시장13, 이사장29)**

표창계획 수립 및 안내	⇒	추천 대상자 공적조서(공문) 제출	⇒	적격여부 심의
〈인사처〉		〈 노동조합 → 인사처 〉		〈상벌위원회〉

※ 이사장29(시설공단노조23,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3, 서울지역수도검침교체노조 3), 시장13(시설공단노조)

(2) 사업별 표창

○ **각 부서 주관 수시표창(이사장)**

주관 부서별 자체 표창계획 수립 *** 인사처와 사전협의 필**	⇒	상벌위원회 심의 의뢰	⇒	적격여부 심의
〈주관 부서〉		〈주관 부서 → 인사처〉		〈상벌위원회〉

※ '18년 표창 계획 외의 표창은 지양하나, 현저한 공적이 발생한 경우 각 부서 예산(포상금)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수여 가능 **(단, 부서 표창계획 수립시 인사처 협조 필히 득)**

○ **서울시 주관 수시표창(시장)** ※ 2018년 市 공무원 표창 계획 참조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문서접수	⇒	대상자 선정	⇒	비위사실 등 표창 결격사유 확인	⇒	표창 대상자 추천
〈市주무부서→해당부서〉		〈해당부서〉		〈감사실, 인사처〉		〈해당부서→市주무부서〉

※ 비위사실 등 표창 결격사유 확인은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

(3) 정년퇴직유공 표창

표창계획 수립 및 안내	⇒	추천 대상자 공적조서(공문) 제출 (→ 인사처)	⇒	적격여부 심의
〈인사처〉		〈각 부서〉		〈상벌위원회〉

☐ 선발요건 및 제외대상(결격사유)

○ 선발요건 : 인사규정 제41조(표창장 수여대상) 해당자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단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 제외대상(결격사유) ※ 기간 산정 시 기준일은 표창 추천일로 함

1.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6조)
2.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 강등(정직 3월 종료일로부터) 24월 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6조)
3. 주의·경고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유공 제외
4.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시장 표창의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제외 대상에 아래 기준이 포함

- 징계처분 미말소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신설부서 제외), 공단 근속 기간 3년 미만인 자

Ⅳ 표창 부상품 및 가점

☐ 표창 부상품 지급 기준

○ 정 기 표 창(이사장) : 15만원 상당 상품권(인사처)

○ 사업별 표창(이사장) : 주관부서 예산 범위 내 자체 집행

- 정기표창 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사유 있을 경우 예외 인정

○ 시장표창(정기 및 수시) : 부상품 수여 불가

❑ 표창 가점 기준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8조 별표8

구 분	훈장 및 포장	표 창 장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장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 이사장
점 수	2	2	1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8조 별표8 외의 표창은 가점부여 불가

○ 상장 및 시의회의장표창은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별 첨 : 1. 사업별 표창 선정 및 제외 사유 1부.

2. 정년퇴직 유공직원 포상 기준 검토(안) 1부.

3. 약식 공적조서 1부.

4. 추천심사위원회 평가기준 1부.

5. 추천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별 첨 1】

사업별 표창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 선정기준

① 표창 대상자 추천이 전 부서에서 가능한지 여부

※ 정기표창 대상자 증가(표창수여 기회 대폭 확대)를 고려한 사업별표창의 보수적 선정

② 기존 수여 여부

③ 예산 확보 여부 및 타 부서와의 형평성

※ 부서의 일상 및 당연업무 수행으로 인한 성적우수 직원 포상은 상장으로 수여

- 표창 수여 시,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 위배 됨
- 정기표창 대상자로 추천 : 포상 기회 有

□ 선정결과

구분	주관부서	표 창 명 칭	신규표창 선정 및 제외 사유	결과
사업별표창	감사실	감사유공직원	특정부서 직원만 추천 가능, 일상업무	제외
		모범사례직원	기존 수시표창	선정
	기획조정실	소송수행유공직원	기존 수시표창	선정
		재정신속집행유공직원	전부서 직원 추천 가능	선정
	총무처	사회공헌활동우수봉사자	기존 수시표창	선정
		기술분야우수직원	기존 수시표창	선정
	인재개발원	우수주니어보드	특정집단만 추천 가능, 상장대체 가능	제외
	안전관리처	안전관리수범	기존 수시표창	선정
		AI·구제역 방역대책유공	특정부서 직원만 추천 가능, 안전점검 등 타표창 추천대체 가능	제외
		안전지킴이의날 표창	전부서(지원부서제외) 직원 추천 가능	선정
	도로관리처	자동차전용도로안전관리	특정부서 직원만 추천 가능, 안전점검 등 타표창 추천대체 가능	제외
	도로환경처	제설유공직원	특정부서 직원만 추천 가능, 당연업무 안전점검 등 타표창 추천대체 가능	제외
	공공자전거운영처	공공자전거 확대구축유공직원	특정부서 직원만 추천 가능, 일상업무	제외

※ ‘18년 표창계획에서는 제외 됐으나, 특별사유 존재할 경우 인사처 협조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수여 가능 ☞ **표창계획의 사업별 표창 추천 및 선발절차를 따름**

【별 첨 2】

정년퇴직 유공직원 포상 기준 검토(안)

검 토 배 경

○ 현재, 정년퇴직 유공 포상 대상은 일반직 및 서비스직으로 한정돼있으나 (준)공무직, 기간직(상수도직)에 대한 차별처우 문제의 소지 및 일반직으로 전환 등에 따른 정년퇴직유공직원 표창 재검토 필요

○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정년(60세)도래 시 단순 일괄포상 지급하고 있어 정년퇴직 '**유공**'의 의미 퇴색

☞ **정년퇴직 유공 포상대상자 확대·기준 정립 및 공단발전기여(근속)기간에 따른 부상품 차등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 정년퇴직 유공직원 포상 개요(현황)

○ 추천대상자 : 정년퇴직예정 ′일반직′ 및 ′서비스직′

※ 〈'17년〉 총 83명 (일반직59,서비스직24) / 〈'18년〉 총 111명 (일반직69,사회복지직42)

○ 정년퇴직 유공직원 지원 사항

① 정년퇴임 행사(연말)

② 표창수여 : 시장 표창(근속기간 10년 이상) / 이사장 표창(근속기간 10년 미만)

※ 표창(장)제외 대상자는 감사장 수여

③ 부상지급(1人 기준) * 근속기간, 표창수여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구 분	지 급 액	지급방법	비 고
계	1,100천원	-	-
유공포상금	500천원	현 금	계좌입금
여행경비지원	500천원	국민관광상품권	표창수여 시 지급
기념패 등	100천원	현 물	-

※ 여행경비지원 : 〈'07년 이전〉 제주도 등 단체여행 → 〈'08년 이후〉 국민관광상품권 지급

○ 예산 : 본부(일반직) 및 장애인콜택시운영처(서비스직) 회계사용

- '17년 예산 : **총 114,240천원** (본부: 69,440천원, 장콜: 44,800천원 *행사비포함)
- '18년 예산 : **총 170,240천원** (본부회계, 행사비포함)

※ 서비스직 일반직으로 전환 『단체교섭 보충협약서(2017.12.29.)』 → '18년 회계통일(본부)

❑ 개선 검토사항 : 정년퇴직유공 포상 기준(안)

(1) 포상 대상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처우 해소에 따른 대상자 확대

(현행) 일반직(사회복지직포함) → **(확대)** 공무직, 준공무직, 상수도 기간직 포함

◆ **'18년 기준 : (현행) 총111명 → (확대) 총149명** * 증 38명

※ 휴직대체·일용·전문계약직 등 기간제(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제외

(2) 포상 시점 - 실질적 공단 퇴직 시

① **60세** : 일반직(상수도직,사회복지직포함), 공무직(설비,보안,공공자전거관리)

② **65세** : 상수도 기간직('16년 일반 및 기간직 입사자), 준공무직(청소,주차,경비)

◆ **공단 정년퇴직 연령은 60세로 동일하나 일부 공무직(청소, 주차, 경비), '16년 입사 상수도직(일반직)은 정년퇴직(60세) 후, 준공무직 및 기간직으로 전환, 65세까지 계속하여 공단에서 근무**

※ 상수도직(일반직) 정년퇴직 시기를 공단 <u>최종 퇴직 시(65세)로 잠정 결정</u> (2016.11.23 전략데스크회의)

(3) 부상 지급 방안 -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 **정년퇴직 '유공'이라는 취지에 부합토록 공단발전기여(근속)기간에 따라 부상품을 차등 지급**

※ 정년 퇴직자의 기념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체협약 제29조의3)

① **부상품 : 근속구간별**(2단계) **차등 지급**

▶ 5년 이상 : **포상금 500천원, 여행경비 500천원, 기념패** (기존과 전부동일)

▶ 5년 미만 : **포상금 500천원, 여행경비 250천원, 기념패**

② **소요예산**

- '18년 : **총 153,400천원** * **149명** (5년이상 107 / 5년미만 42)

【별 첨 3】

* 직원 자율추천 시 사용

공 적 조 서(약식)

성 명		사 번	
직 종		직 급	
공적요지 (200자 내외)			
폰트 종류 및 크기, 줄간 및 자간 변경 금지			
공 적 사 항			
폰트 종류 및 크기, 줄간 및 자간 변경 금지 표 크기 변경 금지 / 내용은 1쪽으로 작성 하단의 추천자 반드시 작성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자 : ○ ○ ○

【별 첨 4】

부서별 추천심사위원회 평가기준표

❑ 대 상 자 : *홍 길 동*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급별 점수				
			S	A	B	C	D
공적 (70)	노력도	공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장애요인(난이도), 필요지식수준 등	25	23	21	19	17
	효과성	내 ·외부에 실제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25	23	21	19	17
	시민 기여도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	20	18	16	14	12
근무태도 (30)		근면, 성실, 팀워크, 기피업무 수행 여부 등	30	27	24	21	18
점수 합계							

※ 평가등급 : S=매우 뛰어나다, A=뛰어나다, B=보통이다, C=약간 부족하다, D=부족하다

▸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여부 및 순위를 정하되, 여성, 하위직 및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최종 추천 순위 결정**

평 가 자 0급 *0 0 0 (인)*

【별 첨 5】

부서별 추천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 부서명 : >

○ 일반직

연번	사번	직 종	직 급	성 명	심의결과	총 점	추천순위
1					*적격/부적격*	*00/100점*	*0순위*
2							
3							
4							
5							

○ 공무직

연번	사번	직 종	직 급	성 명	심의결과	총 점	추천순위
1					*적격/부적격*	*00/100점*	*0순위*
2							
3							
4							
5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시설공단 □□처 2018년 제○회 추천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처장 홍 길 동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